

2017년 항공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7년 충청북도 지방소방공무원 항공분야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일
충청북도지사

I 선발예정인원

채용방법	채용분야	채용계급	채용인원(남)			시험과목(실기)
			계	남성	여성	
계	1개분야	-	4	4	-	
경력경쟁 채용시험	항공 조종사	지방 소방위	4	4	-	□ 운항조정능력(시뮬레이션) (기본비행, 임무형비행, 기본계기비행, 항공안전평가 등)

II 시험구분 및 일정

시험명	시험 일정				
	구분	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표
경력경쟁 채용시험	원서접수		3. 13.(월) ~ 3. 15.(수) 09:00~21:00 ※ 취소기한 : 3. 13.(월) ~ 3. 17. (금) 21:00 까지 ※ 가산점 등록기간 : 3. 22.(수) ~ 3. 28.(화)		
	제1차시험	서류전형	3. 02.(목)	3. 21.(화)	4. 12.(수)
	제2차시험	실기시험	4. 12.(수)	4. 19.(수) ~ 4. 20(목)	4. 26.(수)
	제3차시험	신체검사	4. 26.(수)	5. 02.(화)	5. 10.(수)
	제4차시험	체력시험	5. 10.(수)	5. 24.(수) ~ 5. 26(금)	6. 09.(금)
	제5차시험	면접시험	6. 09.(금)	6. 14.(수) ~ 6. 19.(월)	7. 19.(수)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니, 변경시에는 시험실시 7일 전까지 충청북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 시험장소와 각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공지)하고 최종합격자는 공고(공지) 및 개별 통보합니다.
- ※ 소방항공분야 체력시험은 충청북도 주관 지방소방공무원신규임용시험 체력시험과 동시에 실시하고자 시험의 순서를 변경합니다.

Ⅲ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붙임참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51조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 : 없음

다. 응시연령

- 항공조종(지방소방위) 23세 이상 ~ 45세 이하 (2017. 01.01. ~ 1994. 12.31. 출생)

※ 응시 상한연령의 연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의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사람 포함) ⇒ **1년 미만 :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 2세, 2년 이상 : 3세 연장**

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 분야별 자격 및 경력

채용 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항공 조종	○ 항공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소지한 후 회전익항공기 비행경력이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사항 (①~④)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회전익 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 보유한 사람 (항공법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②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한 사람 ③ 「항공법」 제31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증명을 받은 사람 ④ 「항공법」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한 사람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기준일

- **경력경쟁채용 경력기간 산정 : 면접시험 최종시험일**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징계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경력증명서 제출 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항공조종 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해당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군경력증명서 및 자력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됩니다.

마. 신체조건(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

부분별	합 격 기 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IV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구 분	1차시험	2차시험	3차시험	4차시험	5차시험
시험종류	서류전형	실기시험	신체검사	체력시험	면접시험

- ※ 1) 전(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합니다.
- 3)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국민안전처에서 지원하며,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시험은 충청북도에서 실시합니다.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제출일시 : 2017. 3. 21. (화) 10:00~18:00 (중식시간 12:00~13:00)
- 제출장소 : 충청북도 정보화교육장 (신관 3층)
- 제출방법 :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서류 우측 상단에 성명, 전화번호 기재 후 제출바랍니다.

※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응시 연령 초과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한함

② 경력 및 자격증명서 각 1통

③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지청, 보건복지부, 시·군·구 등에서 발급한 대상자 증명서 1통

④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각 2통

※ 서식(붙임 6, 7 참조) / 신원진술서 단면 출력, 양면출력 금지

※ 서식 다운로드(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 - 민원서식-정보-신원진술서(공무원 임용 및 예정자) 사용

- 유의사항 : 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 미제출 및 서류검토결과 응시자격이 없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

- **과목별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 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항공조종 : 운항조정능력(시뮬레이션)

※ 실기시험은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지원합니다. (세부일정 등 별도 공고)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 2차시험 합격자는 「항공법」 제31조에 의거,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2017. 5. 8. (월)까지 제출 (제 3차시험 신체검사 최종 시험일인 2017. 5. 2.(화) 기준 1년 이내 항공전문의사가 있는 항공신체검사 인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제출)**

라. 제4차 시험 : 체력시험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붙임4 참조)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도핑테스트(붙임 참조)를 할 예정이며 도핑테스트 결과에 따라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에 의거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1단계(**집단면접**), 2단계(**개별면접**) 구분 실시
- 1·2단계 시험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를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 면접시험을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에서 지원합니다. (세부일정 등 별도 공고)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실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 15%, 면접시험성적 10%** 비율로 **합산한 성적** (소수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V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http://local.gosi.go.kr)에서 직접 접속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b21.net)의 「시험채용」란에서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배너를 통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 응시수수료 : 지방소방위 7,000원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cm× 4.5cm이며, 해상도는 100dpi 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입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을 반드시 표기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종료 후, 별도의 안내기간 내에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연령, 자격증 등\)](#)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서 정한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지방(소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VI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해당 여부와 가산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류전형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전형 시행일까지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 자격번호(보훈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함.
-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을 알려드리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 응시자 주의사항

가. 공통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사일 7일 전까지 충청북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충청북도소방본부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이고,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 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실기시험·체력시험·면접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 별도
- 응시자는 시험(실기시험·체력시험·면접시험)시작 40분 전까지(이후 입장 불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4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 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만 인정되고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신분증 미 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소방본부에서는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 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시험원서(사진 포함) 및 제출 서류의 허위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입증서류 미비, 개인정보 불일치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043-220-4813)로 문의 바랍니다.

나. 신체검사 유의사항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합니다.

관련법규(발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의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한 응시자격 정지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신설 2016.3.29.>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붙임 2】

<개정 2015.11.3.>

항공신체검사기준 (항공법시행규칙 제95조제5항, 별표15)

검사항목	제1종	제2종	제3종
1. 일반	가. 두부·안면·경부·몸통 또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주는 변형·기형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악성종양 또는 그 염려가 없을 것 다. AIDS가 없을 것. HIV 양성자의 경우 모든 검사에서 질병이 없을 것 라. 중대한 전염성 질환 또는 그 염려가 없을 것 마. 현저한 전신의 쇠약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비만이 없을 것 사. 중대한 내분비장애나 대사·영양장애가 없을 것 아. 중대한 알레르기성 질환이 없을 것 자. 인슐린이나 혈당강하제로 조절이 필요한 당뇨병이 없을 것		
2. 호흡기 계통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나. 흉막 또는 종격에 중대한 이상이 없을 것 다. 병소의 안정을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후유증이 없을 것 라. 폐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호흡기계통의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마. 기흉이나 그 기왕력 또는 기흉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흉부의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없을 것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나. 흉막 또는 종격에 중대한 이상이 없을 것 다. 병소의 안정을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후유증이 없을 것 라. 폐기능 저하를 초래하는 호흡기계통의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마. 기흉이나 그 기왕력 또는 기흉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을 것 바.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흉부의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없을 것	가. 호흡기계통의 활동성 질환이 없을 것 나. 흉막 또는 종격에 중대한 이상이 없을 것 다. 병소의 안정을 확인할 수 없는 폐결핵 후유증이 없을 것 라. 특발성 기흉 또는 그의 반복되는 기왕력이 없을 것 마. 항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흉부의 수술에 의한 후유증이 없을 것
3. 순환기 계통	가.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없을 것 나. 순환기계통의 중대한 기능 및 구조적 이상이 없을 것 다. 심근장애, 관상동맥장애 또는 이들의 증후가 없을 것 라. 중대한 선천성 또는 후천성 심질환이 없을 것 마. 중대한 자극생성 또는 흥분전도의 이상이 없을 것 바. 심부전 또는 그 기왕력이 없을 것 사. 동맥류, 중대한 정맥류 또는 임파육종이 인지되지 않을 것 아. 중대한 심막의 질환이 없을 것 자. 심장판막의 교체, 영구적인 심장 박동기 이식 또는 심장 이식의 기왕력이 없을 것		
4. 소화기 계통	가. 소화기계통 또는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탈장이 없을 것	가. 소화기계통 또는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탈장이 없을 것	가. 소화기계통 또는 복막에 중대한 기능장애 또는 질환이 없을 것 나.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소화기계 질환이나 수술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5. 혈액 및 조혈장기	가. 고도의 빈혈이 없을 것 나. 중대한 국소적 또는 전신적 임파선 중대와 혈액질환이 없을 것 다. 출혈성 경향을 갖는 질환이 없을 것 라. 중대한 비종이 없을 것		
6. 정신계	가. 기질적 정신장애가 없을 것 나. 향정신성 물질로 인한 정신 또는 행동 장애가 없을 것 다. 약물 의존 또는 알코올중독이 없을 것 라.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분열성 또는 망상장애가 없을 것 마. 정동장애가 없을 것		

	<p>바. 신경증, 스트레스 관련성 또는 신체성 장애가 없을 것 사. 생리적 장애 또는 육체적 요인이 동반된 행동증후군이 없을 것 아. 인격장애 또는 행동장애가 없을 것 자. 정신지체가 없을 것 차. 정신발달장애가 없을 것 카.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에 발병한 행동장애 또는 정서장애가 없을 것 타. 그 밖에 다른 정신장애가 없을 것</p>		
7. 신경계	<p>가. 뇌전증이나 원인불명의 의식장애, 경련·발작 또는 이들의 기왕력이 없을 것 나. 중대한 두부외상의 기왕력 또는 두부외상 후유증이 없을 것 다. 중추신경계통의 중대한 장애 또는 이들의 기왕력이 없을 것 라. 중대한 말초신경계통 또는 자율신경계통의 장애가 없을 것</p>		
8. 운동기 계통	<p>가. 뼈 또는 관절의 심한 기형, 변형이나 결손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뼈·근육·건·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다. 척추에 중대한 질환·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을 것 라.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마.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바.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p>	<p>가. 뼈·근육·건·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척추에 중대한 질환·변형이나 고통을 갖는 질환 또는 변형이 없을 것 다. 척추장애 또는 척추의 질환이나 변형에 의한 사지의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라.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마.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p>	<p>가. 뼈·근육·건·신경 또는 관절에 중대한 질환이나 외상 또는 이들의 후유증에 의한 중대한 운동기능장애가 없을 것 나. 습관성 관절 탈구가 없을 것 다. 사지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운동기능 장애가 없을 것</p>
9. 신장·비뇨·생식기 계통	<p>가.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나. 신적출술의 기왕력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부인과 질환이 없을 것 라.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가 없을 것 마. 임신 중이 아닐 것.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 말부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나. 신적출술의 기왕력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부인과질환이 없을 것 라.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가 없을 것 마. 임신 중이 아닐 것. 다만, 정상 임신인 경우 임신 12주 말부터 26주까지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p>가. 신장 및 비뇨생식기계 질환이나 수술의 후유증, 특히 협착이나 압박에 의한 폐쇄증상이 없을 것 나. 신적출술의 기왕력이 없을 것 다.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부인과질환이 없을 것 라.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월경장애가 없을 것 마.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임신상태가 아닐 것</p>
10. 눈	<p>가. 안구 또는 안구 부속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질환과 수술 및 상해로 인한 후유증이 없을 것 나. 녹내장이 없을 것 다. 중간 투광체·안저(眼底) 또는 시로(視路)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질환이 없을 것 라. 눈 굴절상태에 영향을 주는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 다만, 피검자의 면허나 한정업무 수행 시 지장을 줄 수 있는 후유증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p>		
11. 이비인후과, 구강 및 치아	<p>가. 귀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이상이나 질환이 없을 것 나. 전정기관의 장애가 없을 것 다. 치유되지 않는 고막 천공이</p>	<p>가. 귀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이상이나 질환이 없을 것 나. 전정기관의 장애가 없을 것 다. 치유되지 않는 고막 천공이</p>	<p>가. 귀 또는 관련 구조에 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이상이나 질환이 없을 것 나. 비공·부비공 또는 인후두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 다. 심한 말더듬이·발성장애</p>

	<p>없을 것</p> <p>라. 중대한 이관기능 장애가 없을 것</p> <p>마. 비공·부비동 또는 인후두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p> <p>바. 비공에 공기가 통하는 것을 방해할 정도로 비중격(두비공을 분리시키는 막을 말한다)이 굽지 않을 것</p> <p>사. 심한 말더듬이·발성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없을 것</p> <p>아. 구강 또는 치아에 중대한 질환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p>	<p>없을 것</p> <p>라. 중대한 이관기능 장애가 없을 것</p> <p>마. 비공·부비동 또는 인후두에 중대한 질환이 없을 것</p> <p>바. 심한 말더듬이·발성장애 또는 언어장애가 없을 것</p> <p>사. 구강 또는 치아에 중대한 질환 또는 기능장애가 없을 것</p>	<p>또는 언어장애가 없을 것</p>
<p>12. 시기능</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의 기준은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한 쌍 이하의 상용안경(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동시에 예비 안경을 휴대할 것을 항공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받은 사람만 해당한다.</p> <p>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p> <p>2) 각 눈이 교정하여 1.0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p> <p>3)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한다.</p> <p>나.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100센티미터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p> <p>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교정안경 및 예비안경을 소지해야 한다.</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의 기준은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한 쌍 이하의 상용안경(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동시에 예비 안경을 휴대할 것을 항공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받은 사람만 해당한다.</p> <p>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0.5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p> <p>2) 각 눈이 교정하여 0.5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p> <p>3)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한다.</p> <p>나.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p> <p>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교정안경 및 예비안경을 소지해야 한다.</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다만, 2)의 기준은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한 쌍 이하의 상용안경(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상용하는 교정안경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동시에 예비 안경을 휴대할 것을 항공신체검사증명에 조건으로 부여받은 사람만 해당한다.</p> <p>1) 각 눈이 교정하지 않고 0.7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p> <p>2) 각 눈이 교정하여 0.7 이상의 원거리 시력이 있을 것</p> <p>3) 각 눈의 원거리 시력이 교정하지 않고 0.1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검사와 이후 5년마다 안과 정밀검사를 제출해야 한다.</p> <p>나. 교정하지 않거나 자기의 교정안경에 의하여 각 눈이 30센티미터에서 50센티미터까지의 임의의 시거리에서 근거리 시력표(30센티미터 시력용)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고, 다음의 요건을 갖출 것. 다만, 50세 이상은 100센티미터에서 N14 도표나 그에 상응하는 것의 0.5 이상의 시표를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p> <p>1) 근거리 교정만 필요한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리 교정안경 및 예비안경을 소지해야 한다.</p>

	<p>2) 근거리·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2중 또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p> <p>다. 정상적인 양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적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 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이고 안구의 떨림이 없을 것 사. 색각이 정상일 것 단 색각 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불합격자에게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하고 또한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 받은 비행교관으로부터 신호 등화 실기시험(signal 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p>	<p>2) 근거리·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2중 또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p> <p>다. 정상적인 양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적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 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이고 안구의 떨림이 없을 것 사. 색각이 정상일 것 단 색각 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불합격자에게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하고 또한 국내외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 받은 비행교관으로부터 신호 등화 실기시험(signal light test)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지 않고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p>	<p>2) 근거리·원거리 교정이 필요한 경우, 계기와 손에 있는 차트 또는 매뉴얼을 보기 위하여 2중 또는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여 안경을 벗을 필요 없이 근거리·원거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p> <p>다. 정상적인 양눈 시기능을 가질 것 라. 정상적인 시야를 가질 것 마. 야간시력이 정상일 것 바. 안구운동이 정상일 것 사. 색각이 정상일 것 단 색각 경검사(아노말로스코프) 불합격자에게는 색각 제한사항을 부과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발급.</p>
13. 청력	<p>가. 소음이 35데시벨 미만인 방에서 각 귀가 매초 500, 1,000 및 2,000헤르츠의 각 주파수에서 35데시벨 이하의 음을, 3,000헤르츠의 주파수에서 50데시벨 이하의 음을 들을 수 있을 것</p> <p>나. 가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p> <p>1) 소음이 50데시벨 미만인 방에서 후방 2미터 거리에서 발생되는 통상 강도의 대화음을 두 귀로 올바르게 들을 수 있을 것</p> <p>2) 한쪽 귀의 어음(語音) 명료도가 70퍼센트 이상일 것</p>		
14. 종합	<p>항공업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심신의 결함이 없을 것</p>		

【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p>약 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배 근 력 (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 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앞아랫몸 앞으로 굽히기 (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앞아랫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었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p>제자리 멀리뛰기 (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더(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윗몸 일으키기 (회/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p>왕복오래 달리기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붙임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제23조의2 관련)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별표 참조)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에 대한 선정방법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를 냉장보관 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자사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입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의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 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동의서는 당일 배부 및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붙임 5-1】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 1)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hydromorphone
-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 ▶pentazocine ▶pethidine

II. 금지방법

○ 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붙임 5-2】

공무원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판정기준

약물군	약물성분	판정기준	단위
동화작용제	drostanolone	검출 시	
	methenolone	검출 시	
	methasterone	검출 시	
	testosterone	검출 시	
	1-testosterone	검출 시	
	Clenbuterol	검출 시	
	stanozolol	검출 시	
이뇨제	hydrochlorothiazide	검출 시	
	chlorothiazide	검출 시	
	furosemide	검출 시	
흥분제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검출 시	
	methylephedrine	> 10	µg/ml
	ephedrine	> 10	µg/ml
마약류	Buprenorphine	검출 시	
	dextromoramide	검출 시	
	diamorphine(heroin)	검출 시	
	fentanyl 및 유도체	검출 시	
	hydromorphone	검출 시	
	morphine	검출 시	
	oxycodone	검출 시	
	oxymorphone	검출 시	
	pentazocine	검출 시	
	pethidine	검출 시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치료목적사용 면책 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 명		2. 성 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3. 응시번호	
5. 핸드 폰		4. 이 메 일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역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 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기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 (주/월) -----
-------------------------------	---

【붙임 6】

[별지 제20호 서식] < 2015.4.13 시행 >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성 명				한 자				사 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			혈액형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연 락 처	자택전화 :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적 관계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	<input type="checkbox"/> 복수국적 국가명:	<input type="checkbox"/>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특 기	취 미			자격증				
재산 관계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관계	<input type="checkbox"/>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활 동 내 용			
	<input type="checkbox"/> 없음							
병역관계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군 번	기 간	미필 사유	
						. . . ~ . . .		
	자 (성명)					. . . ~ . . .		
	자 (성명)					. .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